

소 장

원 고 장 여 경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물가액: 금20,000,100원

첨용인지: 금95,000원

송 달 료: 금60,400원

서 울 행 정 법 원

귀중

소 장

원 고 장 여 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 3층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민

(403-010) 인천 부평구 부평5동 194-4 대신스카이프라자 3층

담당변호사 문병호, 김남근, 배영철, 박성룡, 한경수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18층

대표자 위원장 이 진 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0. 4. 12.에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분공개

원고는 1998.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상근 활동가로서, 2010. 3. 8. 행정감사의 목적으로 피고 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자료(2009. 제57차부터 2010. 제8차까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0. 3. 18.에 피고로부터 「'2009년 제57차부터 2010년 제8차까지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 '회의자료 중 개인정보, URL 등 사생활 침해 사항' 비공개」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나. 피고의 업무 및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

- (1) 피고는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 이외에도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을 하도록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법 제21조 제4호,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 운영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8조 제3항).¹⁾

(2) 원고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장, 선출직 공무원 등 공인이 자신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삭제를 결정함으로써 공공적인 비판이 위축되고 있다는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²⁾, 명예훼손 등에 관련된 ‘권리침해’ 회의자료의 경우 특히 주목하여 행정감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 정보공개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정보공개와 원고의 이의

(1)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 성명,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와 URL 을 제외한 회의자료가 모두 공개되었다고 이해하고 2010. 3. 23. 14:00경 피고 위원회를 방문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해 열람하였으나, 피고가 제공한 회의자료에는 ‘권리침해’ 안건 중 「심의대상 목록 및 검토의견(엑셀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가 모두 제거되어 있어, 비공개된 범위가 통지서에 적시된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었고 정보공개에 취지에 전혀

1) 서울행정법원 2010.1.14. 선고 2009구합35924 시정요구처분취소

2) 2009년 3월 9일 이종걸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발족 후로부터 해당 시점까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여야 정치인과 관료 12명 가운데 여당 소속 정치인과 현 정부 관료가 10명으로, 심의위원회는 이들 여권 정치인으로부터 11건의 명예훼손 심의신청을 받아 8건(72.2%)을 삭제 결정했고,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포털 사이트는 이들과 관련한 203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2009년 1월 경기도 지사의 발언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라며 ‘삭제’ 결정을 하고(ZDNet 2009.4.29일자 보도), 같은 해 6월 노동절 집회 참가 시민들을 향해 장봉을 휘두른 경찰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라며 ‘삭제’ 결정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 (2)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피고 담당자는 '권리 침해' 엑셀자료 전체에 대한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에 원고는 엑셀자료 전체가 아니라 개인정보와 URL를 제외한 엑셀자료 열람에 동의함을 밝혔으며, 피고 위원회 담당자는 엑셀자료 중 필요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추후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 제안을 수락한 후 추가 청구 목록(별지 참조)을 제출하는 것으로써 당일의 일부 열람 절차를 마쳤습니다.

라. 추가자료 제공불가 통보 및 원고의 이의신청

- (1) 원고가 일부열람을 한 후 엑셀자료 추가공개를 요구한 다음날인 2010. 3. 24. 피고 위원회의 담당자는 11:00에서 12:00사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어제 예측한 것보다 자료가 많아 며칠 밤샘작업을 해도 정리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추가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 (2) 이에 원고는 2010. 3.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4. 5.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기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 이의신청 기각결정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고는 2010. 4.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비공개”한다는 기각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가. 피고의 처분이유

피고는 「동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름□URL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하여 공개하더라도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큰 정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합니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이유 및 목적

- (1) 피고는 국민의 표현물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되는 바, 시정요구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행정감시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입니다.

(2)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 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 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법률위반에 대해

(1) 정보공개법상 피고의 정보공개 의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한다(정보공개법 제3조)는 대원칙을 전제로 하면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

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정보는 분리가능한 정보입니다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하거나 시정요구를 한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 삭제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는지에 대한 것인 바,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도 충분히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고, 또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면 그 부분을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부분공개가 가능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개인정보 부분을 가려서 복사하거나, 이를 삭제한 출력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한 분리가능한 정보라 할 것인데, 이처럼 분리가 가능한 정보 중 공개 가능한 이 사건 정보를 피고가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3) 정보공개를 거부하더라도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은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처분의 이유부기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4) 소 결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권리침해자료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제한공개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할 것인 바, 피고의 전부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또한 정보공개 거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거부를 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큰 정보라고만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는 바, 이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제시한채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입니다.

3. 결론

이처럼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가린 상태로 공개할 수 있는 분리 가능한 정보로서, 비공개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기에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처분서(2010. 4. 12.자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 | | |
|-----------------|--|
| 1. 갑 제2호증. | 정보공개결정통지서(2010. 3. 18.자 정보부분
공개결정통지서) |
| 1. 갑 제3호증의1. 2. | 정보공개청구 열람□시청 확인서 및 추가열
람신청서 |
| 3.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서 |
| 1. 갑 제4호증. |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
| 1. 갑 제5호증의1. | 정보공개청구 관련 결정 통지 및 자료송부 |
| 2. | 회의록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1부 |
| 1. 위임장 | 1부 |
| 1. 소장부분 | 1부 |
| 1. 납부서 | 1부 |

2010. 7.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민

변호사 문병호, 김남근, 배영철, 박성룡, 한경수

서울 행정 법 원

귀 중